

기숙사규정

- 제정 : 2000. 03. 01
- 개정 : 2010. 03. 01
- 개정 : 2013. 10. 01
- 개정 : 2017.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기숙사의 효과적인 조직과 운영 및 자율적인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고운학사**라 한다.

제3조(개관기간) 개관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 및 방학으로 하며, 사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 ① 기숙사의 폐관기간에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기숙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감이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생활동 및 사생규칙) 활기차고 질서있는 생활을 지향하고 지식과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활동은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사생규칙은 사감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숙사 사감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및 관련행정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 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숙사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재 정

제10조(회계년도) 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예산) 사감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결산) 사감은 당해연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매 사업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13조(조직) 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감 1인, 행정실 관리직원, 사무보조 혹은 야간직원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①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 및 사무보조를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기숙사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숙사 사생규칙을 정한다..

② 행정실 직원은 사감을 보좌하며 사무를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 감독한다.

제15조(업무분장) 기숙사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입사 및 퇴사

제16조(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단체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 또는 본 대학 부설교육 기관에 등록한자로 한다.

제17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자
2. 기숙사 강제퇴사자
3. 휴학 중인 자
4. 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5. 기타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자

제18조(입실) 입사예정자는 당해 입사과정을 마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호실 키수령 및 비품이동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19조(제재) 사감은 정한 규정에 의거 입사자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재입사불가: 해당학기 별점 누적점수 합계 10점이상~ 20점 이하자
2. 강제퇴사 및 영구 입사제한 : 해당학기 별점 누적점수 합계 20점 초과자
3. 별점감면 : 위 1항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내 봉사활동으로 본인의 별점을 감면 가능

제20조(퇴사) 퇴사시에는 자진퇴사 및 강제퇴사가 있으며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자진퇴사를 할 경우 퇴사사유서를 작성 후 사감의 허가를 받아 2일 이내에 퇴사할 수 있다.

제21조(시설관리) 사생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 열쇠관리(실린더) 및 파손시 사생 본인이 변상한다.
2. 실내 기물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보수 및 신규 구입시 실비로 이를 정산한다.
3. 실내에서의 외부음식 주문, 배달 및 반입은 일체 금지한다.
4. 기숙사 방 및 공동구간의 청소 및 청결은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5. 쓰레기 처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제6장 사생 자치기구

제22조(목적) 사생들의 자체 단체로 친목도모 및 건전한 사생활동 영위를 목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제23조(운영방안) 당해연도 사생회 정기 및 임시총회를 통하여 해당 운영방안 및 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